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요핵심전략기술의 정의규정 신설〉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55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관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2. 30.
3. 회 부 일 : 2024.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수출 및 인수·합병 승인,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하 “핵심전략기술”이라 함)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수출 및 인수·합병 승인, 신고제도나 유출을 처벌하는 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여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핵심전략기술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차목 및 제5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핵심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등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전략기술(이하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에 포함되도록 하고(안 제2조제1호자목),

핵심전략기술 중 해외 유출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요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	1. ----- ----- ----- ----- ----- ----- ----- -----

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
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
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 아. (생략)

<신설>

자. (생략)

2. ~ 4. (생략)

<신설>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
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1. 2. (생략)

<신설>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
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전략기술

차. (현행 자목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5. “중요핵심전략기술”이라 함은 제1
호자목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중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
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로서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중요핵심전략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u>국가핵심기술</u> 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① ----- ----- ----- -----국가핵심기술 (중요핵심전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제2조에서 산업기술을 정의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음.¹⁾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다만, 「소재부품장비산업법」상 핵심전략기술²⁾은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³⁾,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및 인수·합병 등에 대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 조치 등을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의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에 포함하고, 핵심전략기술 중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핵심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함에 있어 소재·부품·장비산업 중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⁴⁾, 이러한 기준 등을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부품·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3) 「소재부품장비산업법」상 핵심전략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산업기술’로 보호하고 있으나, 일부 신기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부품·장비분

고려할 때 핵심전략기술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법률상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⁵⁾ 개정안과 같이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에 포함 시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기술보호조치⁶⁾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핵심전략기술 중 일부를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유사한 중요도를 갖는 “중요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한 후, ‘국가핵심기술’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요핵심전략기술”의 개념과 지정절차를 신설하기 보다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상 ‘핵심전략기술’ 중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

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4.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투자, 인수·합병 등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두고 있으나, 기술보호 정책은 규정하지 아니함.

6) * 산업기술로 지정시 적용가능 규정

：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34조(비밀유지의무)

* 국가핵심기술로 지정시 적용가능 규정

： 제9조의2(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제15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제17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9조(산업기술보호교육), 제20조(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제21조(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제22조(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 제34조(비밀유지의무)

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요건⁷⁾에 부합한 기술을 현행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등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1

7)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치안 등에 대한 영향
2.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영향
3.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
4.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
5.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